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17
------	------

2016. 12. 6.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이윤희의원외 37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제5조)
- 나.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공공구매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0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 수의계약 체결 및 우선구매 등 여성기업 우대를 위한 사항들을 명시한 것임.

#### 나. 여성기업의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대표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와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음.<sup>1)</sup>
- 우리나라의 여성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총 1,335,591개로 전체 사업체 중 39.1%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 38.5%, 2011년 38.8%, 2012년 38.9%에 비추어 보면 점진적으로 여성기업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사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서울은 252,069개(18.9%), 경기도는 272,224개(20.4%)가 위치하고 있음.
- 전체 여성사업체 중 대기업은 187개(0.01%)이고 중소기업은 1,335,404개(99.99%)이고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1,211,280개, 90.7%)에 해당되며, 업종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436,338개, 32.7%)과 ‘도매 및 소매업’(394,335개, 29.5%)이 전체 여성사업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 이처럼 여성기업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규모면에서 영세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업종도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여성 창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선호하는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요구됨.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경영자와 여성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많은 제약과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에 제정되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론(제1조~제7조)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제8조~제12조)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관한 사항(제13조~제20조), 여성기업의 확인 및 처벌에 관한 사항(제20조의 2~21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총론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의 목적과 지원대상 등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토록 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제8조),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9조), 자금지원(제10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제11조),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제1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여성의 창업촉진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제8조 제1항) 창업지원에서는 여성창업자 및 창업우수자를(제8조 제2항), 자금지원에서는 여성기업(제10조)을 우대토록 하여 여성기업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 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크게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총론적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제1조~제7조)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제8조~제10조)로 구분될 수 있음.
- 안 제2조는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의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서울시장에게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균등한 사업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서울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안 제7조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및 경비지원을 규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여성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제1항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시에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총액의 3%를 여성기업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치구와 공공기관에 홍보와 지도를 규정하여 생산품 등 여성기업 관련 정보와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에 대한 매뉴얼의 보급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마. 종합의견

- 여성기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성기업 지원과 경영활성화를 부족함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영환경에서 아직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의 경우 여성기업 만을 위하여 수립된 정책과 사업이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의 여성기업 우대 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의의가 충분하며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7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윤희, 김태수, 최영수,  
오봉수, 김희걸, 유 용,  
김용석(도봉), 유광상, 이순자,  
김기대, 이현찬, 김기만,  
허기희, 문상모, 조규영,  
김동승, 김진철, 장홍순,  
장인홍, 김구현, 김문수,  
김동율, 오경환, 남재경,  
강구덕, 전철수, 김상훈,  
문형주, 김인호, 이신혜,  
김영한, 이병해, 이승로,  
맹진영, 이숙자, 이해경,  
우미경 의원(37명)

##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제5조)
- 나.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공공구매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제9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시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 홍보·지도)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성기업 실태조사비 ≍ 550백만 원

- 여성기업 실태조사비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7년~2021년)

- 연간비용 ≍ 110백만 원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유사사업 1회 평균액 적용

· 유사사업 : 2개 사업 평균

○ 11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산출근거	금액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소공인 집적지역 실태조사	120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각 상권별 실태조사 및 컨설팅	100
평균		110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유사사업 예산 적용하여 추계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분    석    관                      이    정    수

☎02-3705-1280, e-mail(intezer@seoul.go.kr)